

건설분쟁은 중재(仲裁)로 해결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瀆)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 “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I. 중재(仲裁)에 대하여

1. 중재(仲裁)제도란?

중재란 분쟁(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仲裁合意)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관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관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이다. 또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된다(근거 :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제37조).

2. 중재제도의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 중재가 약 6개월, 국제중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제도를 활성화

하여 심리 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한다. 신속절차의 경우 1회 심리로 1개월 내에 처리될 수 있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판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은 외국 중재기관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와 소송 비용의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5천만	1억	10억	100억
중재(A)	1,580	2,329	13,079	52,029
소송(B)	7,185	9,698	39,398	316,148
A/B(%)	23.5	24.1	33.2	16.5

*소송 비용에는 3심까지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 것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

신청금액	관리요금	부가세	요금합계	수당	예납금액
5백만원	100,000	10,000	110,000	0	110,000
1천만원	200,000	20,000	220,000	0	220,000
2천만원	350,000	35,000	385,000	0	385,000
4천만원	650,000	65,000	715,000	700,000	1,415,000
5천만원	800,000	80,000	880,000	700,000	1,580,000
1억원	1,300,000	130,000	1,430,000	800,000	2,230,000
2억원	1,800,000	180,000	1,980,000	2,000,000	3,980,000
3억원	2,300,000	230,000	2,530,000	5,500,000	8,030,000
5억원	3,300,000	330,000	3,630,000	6,100,000	9,730,000
10억원	5,800,000	580,000	6,380,000	7,600,000	13,980,000
50억원	25,800,000	2,580,000	28,380,000	13,200,000	41,580,000
100억원	38,300,000	3,830,000	42,130,000	17,700,000	59,830,000
200억원	58,300,000	5,830,000	64,130,000	23,000,000	112,130,000
300억원	78,300,000	7,830,000	86,130,000	26,000,000	112,130,000
500억원	118,300,000	11,830,000	130,130,000	32,000,000	162,130,000
800억원	178,300,000	17,830,000	196,130,000	40,500,000	236,630,000
1,000억원	218,000,000	21,830,000	240,130,000	43,500,000	283,630,000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1,000,000	100,000	1,100,000	1,900,000	3,000,000

* 중재인 수당 금액은 청구금액 2억원 이하는 중재인 1인, 2억구간 초과는 중재인 3인의 수당금액임

*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 수당 및 판정문 작성 수당으로 700,000원이 추가됨

4) 국제적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한 계약국 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한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 하는 기업인 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다.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토록 한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실무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6)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7)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8) 심리의 비공개

중재심리는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리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증인선서도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련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중재 대상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근거: 중재법 제1조 및 제2조)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형사사건, 비송사건, 강제집행사건, 행정소송사건 등)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1) 적용대상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① 거래 양태별

매매(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 대여금, 임대차, 고용,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Management 계약(연예인, 운동선수 등), 광고, 보증 등

② 거래 행위별

상행위,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③ 거래 외형별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알선, 부동산매매, M&A, 건물전세, 상품제조판매, 도소매 등

2) 분쟁 원인

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

④ 사무관리에 의한 배상청구권

⑤ 채무부존재 확인

3) 요건

① 중재 당사자는 행위능력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상법상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도 상행위의 주체로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조달청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이 때 분쟁이 생기면

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분쟁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③ 중재합의 범위 내에 속하여야 한다.

4.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 한다. 이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 하고 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 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재합의의 내용

중재합의를 할 때 중재를 행할 중재자,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중재합의의 효력

① 직소금지

중재법 제9조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자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1차 변론기일 전까지 본안 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② 최종 해결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분쟁을 한번으로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국제적 효력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약칭으로 New York협약이라 한다. 1958년 채택, 1973년 한국 가입, 2006년 6월 현재 137개국 가입)에 의하여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때 한국법상 당사 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계약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을 하였다.

4) 중재합의의 실례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중재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절차

△ 국내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국제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

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III. 상대방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판정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판정은 외국판결과 같이 그 자체로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신고받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판결에 관한 소에 대하여 중재계약에서 합의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이 관할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집행판결의 표준적인 주문은 “원, 피고 사이의 ○○중재판정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중재인 ○○(또는 상설중재기관명)이 행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불하라는 중재판정을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표시를 한다. 집행판결은 동시에 중재법 제36조가 열거하는 중재판정 취소사유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용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6조 제4항).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의 주문에 한하여 행하여지고, 중재판정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없다.

1) 중재판정 취소의 소(중재법 제36조)

①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취소사유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

-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통지 또는 본안 변론에 대한 방어권 결여
- 중재부탁의 범위 이탈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반

② 법원의 직권 취소 사유

- 중재대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을 때
-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

③ 취소의 소 제기

-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정정, 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
-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중재법 제37조-제39조)

① 신청요건

-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 그리고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인증된 등본의 제출
- 중재판정 또는 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된 한국어 법역문의 첨부(중재법 제37조)

② 구분

- 국내중재판정
 -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중재법 제38조)
- 외국중재판정
 - 뉴욕협약 적용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을 받는 승인 또는 집행(중재법 제39조)
 - 민사소송법 준용 :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중재법 제39조)

IV. 중재계약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

1. 알선

알선(Mediation)이라 함은 국내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한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입·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중재합의도 없는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이 분쟁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강제력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비밀을 보장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성공률은 2005년 58%로 전년도보다 13%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객의 분쟁처리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 조정

조정은 중재규칙상의 조정, 대외무역법 등 상의 행정조정 그리고 법원에서 행하는 민사조정이 있다.

조정은 중재나 소송에서 중재인(판정) 혹은 법관(판결)이 문제된 사안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분쟁당사자 측에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조정(안)의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3. 상담

상담이란 국내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 즉, 상사분쟁의 예방 및 해결, 계약서의 작성, 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외국의 법령, 제도, 관습 등 궁극한 사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전화, 내방,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 문의·안내 받는 제도이다. ☎

문의 : 대한상사중재원 본부 02)551-2000-19
 부산 051)441-7036~8



토막
상식

구두쇠 재무장관의 절약 기법 - 실루엣

실루엣은 하나의 색조만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나 도안, 또는 물체의 윤곽이나 그림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인물 또는 사물의 외관을 대충 나타낸 그림을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복식용어로는 복장의 윤곽이나 외형을 말한다.

이 '실루엣'이라는 말은 1759년 프랑스 재무부장관에 임명된 에티엔 드 실루엣 Etienne de Silhouette 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8세기 중엽,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으로 엄청난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그때 재무 장관에 취임한 실루엣은 재정난의 원인이 귀족들의 사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귀족들의 사치를 막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귀족들의 초상화를 검은색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게 했다. 그림 비용을 절

약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또 엄격한 재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귀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조소의 뜻을 담아 검은색으로만 그린 그림을 '실루엣'이라 불렀다. 결국 실루엣 장관은 9개월 만에 재무부 장관에서 물러났고,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스스로 실루엣 그림의 매력에 빠져들어 자신의 성 안을 자기가 그린 실루엣 컬렉션으로 도배를 하고 살았다.

이 실루엣이라는 예술 기법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1835년 '실루엣'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프랑스 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구두쇠 경제 정책을 폈던 재무부장관 실루엣.

오늘도 거리에는 실루엣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이 많이 눈에 띈다.